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1. 26 선고 2016가단62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및 구상금 청구]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결 2016. 12. 15

판 결선고 2017. 1.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는 피고가 신축한 의왕시 D동 소재 E의 분양대행업무 및 평택시 F상가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는데,피고로부터 분양받은 E 분양계약자 11명이 2006. 2.경 165,000,000원 상당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F 상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자,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위 수분양자들을 만나 합의하되 원고가 수분양자들에게 일단 합의금을 지급하면 나중에 피고가 지급해주겠다고 하여 당시 F 상가 분양대행업무를 맡고 있던 원고는 피고의 위 요구를 거절할수 없어어쩔수 없이 수분양자들의 대리인인 G 과 20,000,000원에 합의하고 피고대신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그에 따라 위 가압류가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대신 합의금 20,000,000원을 지급한 원고에게 위 20,000,00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8, 9, 10, 22, 23, 2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면,피고로부터 E 상가를 분양받은 H 외 10인이 위 상가가 부실시공 되었고 하자가 있다며 소를 제기하는 한편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고,그에 따라 피고소유의 평택시 F 2()1호 등에 관하여 2006. 2. 10.자로 청구금액 165,000,000원으로 된부동산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E 관리소장이라는 G과 사이에 2006. 2. 26.자로 "본인 A은 금 10,000,000원을 27일 (기에게 지급하고,3. 26.까지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지급이유 : 평택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라고 기재된 합의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지불각서'라 하고,이후 원고가 지급이유를 "평택 B 가압류 취하 및 소송취하 대위변제"로 수정하였다)를 작성한 사실,이후 2006. 3. 8.자로 위 가압류등기가 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고, 피고에 대한 본안소송이 2006. 2. 27.경소취하로 종국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E 상가의 건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총괄한 자가 원고였고 그에 따라하자 문제에 대해 원고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합의지불각서를 작성하며 수분양자들과 합의한 것일 뿐 피고는 위 합의와 무관하다고 다투는상황에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4,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대신 변제하고 추후 피고로부터 이를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희정